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1. 2. 24.

증권선물위원회

- 1. 일 시 : 2021년 2월 24일(수) 15:22~23:28
-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 3. 출석위원
- 이 명 순 위원장
- 이 상 복 위 원
- 이 준 서 위 원
-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 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 1) 2020년도 제21차, 제22차 및 2021년도 제1차,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보고
- □ 2020년도 제21차, 제22차 및 2021년도 제1차, 제2차 증권선물위 원회 및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보고
- 2) 의결 및 보고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41호 『□□□□□□□□□□□□ 등 **12개**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제42호 『㈜■■■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1) ▲▲▲▲ 사고발생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시 해당 주식은 회사 분할이 있었음. 당시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거래주문을 받게 되었을 때 전·후 2주 간격을 두고 회사분할 등 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

시 저희가 그 기간에 포섭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음. 거래가 재개됐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음. 저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였음. 저희가 공매도가 발생하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당사가 최초 주문시에는 적어도 기업행위 절차는 검토했었는데 이후로도 저희가 이처럼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점, 그리고 당시 거래규모가 크지 않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희망함.

▶ (진술인 2) ♀♀♀은 Prime Broker와 총수익스왑거래를 통 해 해당 주식을 매수·보유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것이 현 물이 아니고 스왑을 통해서 Long swap position을 가지 고 있었음. 동사의 투자부서에서 이 스왑(Swap)으로 가지 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매도하는 주문을 입 력했는데 이것을 트레이더가 매도주문을 냄에 있어서 원 래 Prime Broker에 스왑거래를 청산하는 매도주문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그만 착각을 해서 CFD 태그를 제대로 못 보고 현물거래로 매도주문을 내게 됐음. 그래서 잔고가 현 물로 가지고 있지 않고 Swap position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물거래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공매도 사태가 초래가 됐 음. 이것이 의도적으로 공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보기 위한 상황은 아니었고 주문상 착오를 일으켜서 공매도 상황이 초래되었음. 주문체결관리시스템상 개선을 취해서 앞으로 는 스왑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에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 귀책사유와 비난가능성 측 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사실관계를 참작할 때는 굉장히 중

대한 공매도 위반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 (진술인 3) 본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도하지 않게 이례적으로 오류가 발생해서 공매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음. 당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한 후에 사건 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 앞서 본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음.1 첫 번째, 본건 같은 경우에는 거래에 특별한 공매도를 하고자 한 의도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두 번째로 본건 자체가 거래의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말 씀드리고 싶음. 물론 이 모든 거래는 결제일에 결제가 완 료되었고 실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는 않았음. 세 번째 로 본건 거래 자체가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뒤에 즉시 자 발적인 신고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음. 귀 위원회에서 당사에 대한 처분수준을 정 함에 있어서 이런 사실관계와 정황을 모두 참작하셔서 그 에 상응한 조치수준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림.
- (위원) 세 분 말씀의 공통점이 공매도를 하려는 의도는 없 었다는 말씀이시고, 단순 부주의 정도라는 주장이신 것 같음. 공매도 행위 시점 전이나 이후의 사정이나 결과 발생, 했던 조치들은 고려사항이 아니고, 공매도에 대한 제재조치는 '고의'나 '과실' 불문하고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위원) 부주의가 되었든, 과실이 되었든 위반을 한 것은 사실이고, 트레이더의 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의 경우에는 CFD라는 태그가 달려 있음에도 착오로 거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부주의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드릴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 경우에도 일단 해당 주식이거래중단된 것을 인지하셨으면 왜 거래가 중단되었는지에대한 이유를 확인했으면 회사가 분할되었든지, 이런 내용을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역시 그것도 부주의로 어쩔 수 없이발생한 것으로 보임.
 - ▷ 진술인이 퇴장함.
- ㅇ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의결*함
 -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43호 『◆◆◆◆◆㈜ 임원의 특정증권 등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 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임원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및 변동상황 보고의무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음. 저희들이 그동안다루었던 안건들을 보면 많이 모르고 있고, 또 하나 제재수위도 아주 약한 편임. '경고'를 하게 되면 경고장을 서면으로발송하는지?

- (보고자) 그러함.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보고안건 제4호 **"2020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건은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음.
 -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접수함
- □ 보고안건 제5호 **2020년도 하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건은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음.
 - (위원) 불공정거래행위를 검찰에 고발이나 통보하고 난 이후 실제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났고, 그런 통계 라든가, 무죄가 있었다면 왜 그런 것인지를 포함해서, 우리 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 ㅇ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 보류*함
 -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보고안건 제6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 개정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지표금리 관련해서 현행 업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리를 무위험지표로 사용하고 있는지?
 - (보고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회계처리 하고 있음.
 - (위원) 지표금리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업무에는 영향이 없는지?
 - (보고자) 그러함. 작년 1차 개정을 통해서 변화가 없도록 한 것임.
 - ㅇ 원안접수 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접수함
- □ 보고안건 제7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 개정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상장기업의 경우는 K-IFRS가 적용이 되니까 이것과 는 관련 없는지?

- (보고자) 맞음.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예외 없이 연결을 하고 있음.
- ㅇ 원안접수 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접수함
- □ 보고안건 제8호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처리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요건'은 작년도 면제요건 과 동일한 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이 면제요건을 악용했던 기업이 작년에 없었는지?
 - (보고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의해서 걸러낸 사례들이 일부 있었음.
 - (위원) 악용한 기업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보고자) 제재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연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관련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님.

- (위원) 지금 제재면제 의결이 3월24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 탈락을 하면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입장이되는데 그렇다면 작년 1분기 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할 때도 이렇게 시간을 짧게 주었었는지? 신청했는데 의결에서 탈락하면 1주일 만에 사업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할수 있는지?
- (보고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심사할 때 최대한 많은 기 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사하는 부분이 있고 실무적 으로는 금감원과 한공회에서 검토하는 기간 동안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회사들은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됨.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지난 기간 동안 심사했 던 경우를 보면 감사인이 1차적으로 이것에 동의를 해 주어 야 되는데 감사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청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1년 전에 했던 사업보고서에서 몇 개 회사만 있었고 그 뒤에는 감사인의 동 의를 받아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크게 발 생한 적도 없었고 의결 전에 문제가 되는 회사들도 그런 부 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보고서나 1분기 보고서, 반기보고서 했을 때도 의결 일정을 이렇게 촉박하게 했었는지?

- (보고자) 일정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음.
- (위원) 지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4월 30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4일까지, 그런데 주권상장 외국법 인은 4월30일에서 한 달 연기된 5월31일인데 왜 같이 안 가고 따로 가는지?
- (보고자) 저희가 사업보고서를 연장해 주는 기한 45일이나 30일은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이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였음.
- (위원)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인데 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서 코로나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장은 받았으나 그 이후 연장 받은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한 법인들, 그런 이슈들은 없었는지?
- (보고자) 그동안 제출할만한 기업들은 연장된 기한 내에 다제출했음. 그리고 '필요시 개별연장'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불가피하게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
- (위원) 감사인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호소하는 이슈인데 제출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실제적인 현장감사 내지는 현지에 있는 외부감사

인 활용, 심한 곳은 외부에도 못 나가게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음.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일부 감사가되는데 향후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음.

- (보고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비대면 외부감사 진행 관련해서 금감원을 통해 지침을 배포해서 지원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리고 개별사안을 살펴서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음.
-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접수함
- □ 의결안건 제4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위원) 입법예고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 (보고자) 대부분 개인투자자들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과징 금이나 형벌강도가 너무 낮아 상향해 달라는 내용이었음. 이는 법상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음.
 - (위원) 기관에서는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었는지?

- (보고자) 저희가 협회와 금융감독원 등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증권사 등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
- (위원)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관련 소형 기관투자자들이 보 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보고자) 소형 기관투자자들이나 개인들을 위해서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토록 하였음.
- (위원)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 준이 법인은 6,000만 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 원으로 너무 낮은 것 아닌지?
- (보고자) 다른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고려해서 정한 것으로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여러 건 냈다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45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제46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47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48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49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50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51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시장조성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국거래소에서 보통 어떤 제재를 했는지?
- (보고자)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일중 매매거래기간 시간동안에 시장조성자가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될 기준을 정하고 있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시장조성자 자격을 박탈하는데 시장조성자 자격이 박탈될 정도로 벌점을 부과 받은 자는 없음.
- (위원) 한국거래소 차원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점검의무 관련 하여 확인한 적이 있는지?
- (보고자)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차입을 했어도 매도일 결제일 에 수량이 부족한 주문에 대해서는 매 6개월에 1회씩 점검을 해 오고 있었음.
- (위원) 주로 외국계 금융투자업자만 무차입 공매도로 자본시 장법을 위반했다고 금융위 자조단에 통보되고, 국내 증권사 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음.
- (보고자) 국내사나 외사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점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사가 공매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음.

- (위원) 공매도 업틱를 예외사항 중에 그동안 공매도가 제일 많았던 것이 어떤 사항이었는지?
- (보고자) 파생시장에서 시장조성을 하는 시장조성자가 파생시 장의 포지션을 헷지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와서 주식종목 이나 바스켓을 공매도하는 경우가 약 75% 정도로 가장 많음.
- ㅇ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52호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 선정 심사안』, 제53호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정규정 승인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거래정보저장소(TR)가 2009년 9월 G20정상회의에서 본 격적으로 논의됐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보통 거 래소에서 거래정보저장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 (보고자) 한국거래소의 자회사형태도 있고 미국은 CME그룹 이 TR을 운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LS그룹 산하의 TR자회사가 존재하고 있음. 다른 형태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DTCC라고 미국의 현물청산결제기관이 TR을 운영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Eurex와 스페인의 청산회사의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아시아에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금융청이 직접 TR을 운영하고 있음.

- (위원) TR의 거래정보 검증, 품질관리 및 보관 관련 전송
 된 거래정보의 형식, 논리적 정합성 등을 검증한다고 하셨는데 논리적 정합성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 (보고자)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래일과 종료일이 있으면 종료일은 거래일보다는 나중에 와야 됨. 옵션거래를 하면 옵션품의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임.
- (위원) 거래당사자의 보고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양쪽에 불일치 수정보고를 통보하고 보고의무대상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내 수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영업 일 내에 가능한지?
- (보고자)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저희가 그동안 보고제 도 설계를 하면서 많은 시장 참가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1 주일 정도를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음.
- ㅇ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209호 『카카오페이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54호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지난해 6개월 내 단차 발생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 는지?
 - (보고자) 단차가 발생할 만큼 주주권 활동을 하지 않아서 없음.
 - (위원) 실제로 주주제안을 한 건 중에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과거 한 10년 동안 150건 정도가 있는데 그 주주제안이 전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한 경영권 영향 목적임. 예를 들어 임원 선임·해임이라든가, 정 관변경이라든가, 자본금변경이라든가, 이 모든 경영권의 행 사 목적과 관련된 주주제안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의결 권 행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주주제안의 주 체로서의 의미인지? 아니면 의결권 행사하는 것까지 포함하 는 것인지?
 - (보고자) 주체로서의 주주권 행사로 경영참여 목적임.
 - (위원) 주주권 행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제안 주체를 의미 하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여기 규정상 요건 중에 하나가 수탁자책임부서와 운용부서 간에 차이니스월(Chinese Wall)관련하여 조직도가나와 있고, 수탁책임실과 주식운용실 이 두 부서간의 차이니스월(Chinese Wall)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두 부서 간에차이니스월(Chinese Wall)이 있는 것은 제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맞는 것 같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운용전략실과주식운용실은 상호 밀접한 정보교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운용전략실과 주식운용실 사이의 차이니스월(Chinese Wall)은 필요가 없는지?
- (보고자) 운용전략실에서 받는 정보는 실제로 개별 주식의 운용 현황보다는 주식의 규모 등 전술적 자산배분을 하기 위한 정보가 대부분임. 물론 같은 전략부문장 밑에 운용전 략실과 수탁자책임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공개중요 정보에 대한 활용은 전략실에 거의 있지 않음.
- (위원) '21.2.4.일 기준,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총 72개사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권 영향 목적이 모두 없는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여기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다는 것은 주체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의결권만 행사 하는 경우인지?

- (보고자) 예를 들어 다른 주주의 제안으로 주총안건이 올라 와서 거기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경영권 영향에 주는 것으로 보지 않고, 국민연금 이 자발적으로 사외이사 추천을 하거나 하는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제안을 한다면 그런 상황일 경우 주 총에서 논의되기 전부터 이런 부분을 공시하는 것임.
- (위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의 주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경영권 영향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 (보고자) 국민연금이 만약에 법상 여러 가지 요건에 맞는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주제안 행사를 결정한다면 저희는 그것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일부 저희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께서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있었는데 만약 그런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임.
- (위원)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경 영권 영향의 목적으로 본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주체적으로 주주제안을 한 경우 가 현재로서는 없는지?
- (보고자) 저희가 경영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과 시행령에 따라서 5% rule 규정에 경영권 참여인지 아닌지가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배당을 조금 더올려 달라 하는 것들은 경영참여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외이사나 이사진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로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 (보고자)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 단순히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의 원천적인 권리로 경영권 참여와는 상관이 없음.
- (위원) 원래 배당도 경영권 참여였는데 빠졌는지?
- (보고자) 연기금에 대해서는 원래 아니었음. 그것은 당연히 수익률을 위해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 영권 참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음.
- (위원) 아무튼 경영권 영향 목적의 주주제안을 주체적으로한 것은 현재 시점에 없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사가 72개사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단순투자자인지?
- (보고자) 단순투자자 또는 일반투자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음.

- (위원) 국민연금이 지배구조가 엉망인 기업에 대해서 지배구조를 바꾸라는 것은 지배구조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어 경영권 참여로 보는 것인지?
- (보고자) 그것도 지난번에 5% rule 개정할 때 논의되었던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연기금이 투자대상 기업 전체에 대해서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그 정책에 따라 하는 경우에는 경영권참여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음. 다만, 어떤 특정기업을 특정해서 해당 이사진을 바꾼다든지, 감사위원을 바꾸는 제안을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55호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 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56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등예탁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이상 2건을 일괄 상 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전자등록 운영 현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 (보고자) 전자등록 현황은 2020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상 장회사 2,588개사가 다 전자등록화 되어 있고 실제 상장회사 개수는 2,200여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가 자발적으

로 전자등록한 회사의 개수는 약 377개사이고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되어 있는 자산의 시가총액은 5,100조 원 정도에 이르고 있음. 실제 국채나 공사채 같은 경우에는 100% 전자 등록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임. 다만, 주식 같은 경우 옛날에 종이주권으로 발행된 것을 주주들이 실물주권으로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음.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전에는 보통 예탁결제원이 주권 등을 예탁 받고 있으니까 일반 주주와 회사들이 소송하는 경우 주권압류, 질권설정 등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궁금함.
- (보고자)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는 예탁에서 공탁법상의 공탁이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곤란해서 저희가 압류 병합되는 순서대로 해서 법원에 집행공탁권을 하고 있음.
- (위원) 비상장회사 중에 얼마만큼 전자증권을 발행한다고 얘기 할 수 있는지?
- (보고자) 작년 말 기준으로는 비상장회사가 법적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전자등록한 회사의 개수는 약 370개사 정도로 많지는 않음.
- (위원) 전자등록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비용보다 이득이 훨씬 많을 듯한데, 왜 전자등록을 안 하는지?

- (보고자) 현행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 상 명의회사 대행회사를 꼭 선임을 해야 됨.
- ㅇ (위원) 그러면 그것이 비용이 드는지?
- (보고자) 아무래도 대행회사와 대행계약을 맺게 되면 주주명부 관리라든지 권리행사에 있어서 계약을 맺지 않는 것보다는 비용이 발생하지만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대비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음.
- ㅇ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57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ABCP, AB전단채는 비등록인데, 등록과 비등록이 무 슨 차이가 있는지?
 - (보고자) ABCP는 CP의 일종으로 발행되고 있고 AB전단채는 전자단기사채법이 폐지되기는 했지만 결국 기업어음증권(CP)을 유사하게 발행하는 사채형식으로 단기사채로 발행하는 것임. 그런데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하려면 금감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금감원에 유동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세히적어서 금감원에 등록해야 되는데 장기간 소요되고 유동화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면 다시 또 변경등록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BCP나 AB전단채를 많이 이용하려는 유인이 존재해 왔음.

- (위원)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유동화거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위험보유규제 도입은 외국에서도 다 활용 을 하고 있고 시기적절하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함. 그런 데 여기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경제적 이해관 계가 소멸되어 비우량자산을 유동화에 제공할 유인이 발생한 다고 되어 있는데 ABS발행을 할 때 이미 유동화 기초자산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닌지?
- (보고자) 예를 들어 금융기관 안에 있는 대출채권 중에 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발라내어 그것을 유동화를 통해서 자기자체 장부에서는 떨어내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유동화증권 관련된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서유동화 이후에도 일부 신용위험을 보유하도록 위험 보유 규제가 영미 쪽에서 도입되었음. 저희도 Global rule과 같이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발행·유통되는 ABS증권 관련해서도 해외투자자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생기다 보니까이번 기회에 이런 규제도 기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하여 이번에 도입하게 되었음.
- (위원)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의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과 연결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Multi- Seller 유동화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채권담보부 증권(CBO)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의 경우에는 등급이 다양한 것을 받아서 Trench를 나누어서 하는 것도 다양하게

하고 신용등급이 나가는 것도 다양하고 우리나라에도 채권 담보부증권(CBO)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가 있음.

- (보고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도 그 부분이 해석상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전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도 가능한 것이 맞음. 다만, 중소기업 매출채권이나 규모가 조금 작은 NPL을 모아서 증권회사가 유동화를하는 경우, 중간에 증권회사가 끼어서 그 자산을 한 번에 다인수 받아서 형식적인 자산보유자 1명이 되어 그것을 유동화하는 형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저희는 그 과정에 증권회사가 끼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유동화전문회사(SPC)는 하나여야 하지만 자산보유자는 여러 명이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률상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그리고 5% 이하의 매입의무를 부과하는데 탄력적인 규제 운영을 위해 위험보유방식을 수직, 수평, 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 (보고자) 선택할 수 있음.
- (위원) 기업자금 조달 활성화 하는 것은 좋은데 유동화 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범위를 확대하고 장래자산, 무체재산권 유동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개념을 정비하겠 다고 했는데 대상자산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되면 요즘 "유동화전문회사(SPC) 실체가 없다."고 하

는데 혼탁해질 위험의 가능성은 없는지?

- (보고자) 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혼탁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각종 모니터링시스템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도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음. 혹시 혼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보겠음.
- (위원) 어쨌든 비등록 유동화가 등록 유동화보다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거의 다 등 록으로 포섭하겠다. 그 대신 등록절차의 간소화, 그런 취지 인지?
- (보고자) 사실 등록 시장이 커지는 것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부분임.
- (위원) 그러면 등록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비등록이 등록으로 오겠는지?
- (보고자) 유동화법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다양한 자산들을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법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 측면에서 유동화법이 조성법으로써의 기능을 해 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등록의 장점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예전에는 세제혜택까지 있었는데 그 세제혜택들이 만료되어 지금 현재는 혜택이 조금 축소된 상황이라서 이번에 인센티브도 정비하고 전반적으로 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을 조금이라도 키우려고 노력을 했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58호 『㈜**다보링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 치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2018회계연도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으로 변화한 것이 IPO와 관련성은 없는지?
 - (보고자) 과거 재무제표니까 참고목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주재무제표는 2020년 반기감사보고서가 상장을 진행하는데 주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정회 18:55 속개 19:39

□ 의결안건 제59호 『알서포트㈜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관계회사의 PEF의 투자구조를 보시면, 유념해서 보실 것은 운용력인 GP가 투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 고 운용하는 투자대상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소위 블라 인드방식의 펀드로 운용사의 GP는 이에 상응하는 투명하 고 성실한 운용과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운용현황을 명확 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회사의 경영진 역시 그렇게 전달 받은 감사보고서 등의 운용사항을 외부감사 인에게 숨김없이 알릴 책임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음. 하 지만 이러한 보고가 회사와 GP 모두에 의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았음. 저희들 입증감사절차를 요약해 드리면 비 유의적인 부문으로 Scoping이 있었고 이후에 저희들이 투 자주식에 대한, 회사의 진술 그다음에 회사가 저희들에게 제출했던 자료에 기반해서 PEF에 대한 출자확인서와 GP 의 날인된 재무제표 및 회사 경영진의 경영자확인서 등의 징구를 통해 PEF 재무제표 신뢰성을 확인하였던 바를 말 씀드림. 추가로 저희 감사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회계법인에서 감사하는 공동투자자인 ㈜○ ○의 사업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회사와 동일한 회계처리를 수행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알서포트㈜ 의 지분법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 었음. 추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실무에서는 관계기업의 감사를 받지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 신뢰성 확 보를 위한 필요한 절차로 책임 있는 경영진의 날인된 재 무제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관련해서 당시 관계회사의 지분가치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17%라는 부분이 금번 조치사실의 핵심인데, 저희가 양 적인 부분 이외에 어떤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해당 투 자를 비유의적인 부분으로 Scoping 하였고 또한 입증감사 절차를 어찌 진행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다음 Scoping 결론에 기반해서 입수한 GP가 날인해서 제공한 PEF의 날인 재무제표와 저희들이 2014년 이후 꾸준히 4 년 동안 질문했으나 회사가 없다고 답변하고 회사 GP에 게만 제출했던 PEF의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음. 항상 저희 들이 중간과 기말감사 Wrap-up meeting때 회사의 CFO와 회계팀장이 동석을 했고 저희들이 이 두 분들한테 재무제 표 신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PEF에 대한 외부감사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었음. 이런 배경에서 회계팀 장이 하루 종일 나란히 같이 하고 있는 자금팀장으로부터 PEF가 전달한 감사보고서를 자금팀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바 GP에게 별도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줄 알고, 별도의 보 조수단인 날인재무제표를 그것도 동일한 자금팀장을 통해 서 또 다시 요구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저희들로서는 도 저히 납득이 되지 않음. 사후적으로 받은 감사보고서 주 석 사본인데 주석을 보시면 ㈜○○○○와 관련한 평가 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PEF의 감사보고서 일자를 봤 음. 이 보고서 일자가 2017년 2월6일임. 저희가 알서포트 ㈜ 기말감사에 착수한 날이 2월13일로 단지 1주일의 차이 밖에 안남.-그러면 결국은 GP가 감사보고서와 별도로 재 무제표의 주석을 제거하고 날인해서 그 이후에 이원화된 자료를 회사에 전달했던, 하나는 회사용이고 하나는 날인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들한테 감사목적으로 전달한 것으 로,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공동집행사원 ㈜○○○

○○○○는 AUM이 현재 6,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사 모투자전문운용사로 알려져 있는데 2015년 당시 PEF 투 자하고 있는 투자재산이 첫해에 바로 60% 이상 손상되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동 1주일의 기간 내에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이원화 시켜 따로 따로 준비했 는지, 하나는 투자자인 회사용 또 하나는 저희 같은 외부 감사인한테 참고하라고 따로 BS/PL만 따로 준비해서 줬 는지,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유감 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관계회 사에 대한 감사수검 여부를 분명히 꾸준히 질문했었고 이 에 대한 회사의 답변은 4년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아니 라고 했음. 또한, GP로부터 전달된 별도의 날인 재무제표 를 보시면 4년간 동일하게 주석을 제거하고 줬음. 저희들 이 감사보고서 제시 요청을 꾸준히 했었고, 또한 관계회 사 경영진한테도 온전한 날인 재무제표 제시를 요구했었 는데 이 부분의 통상적인 감사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감사방해의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림. 아울러 저희가 매년 감사진행시 문 의하였던 감사보고서만 회사가 저희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었어도 오늘 증선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서 진술할 상황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임. 참고로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보시면 '과실'의 사유 중에 통상 적으로 적용되는 감사절차는 대부분 취하였지만 회사의 특성. 즉, 저희들이 이 회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GP 가 이원화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했던 상황과 회사가 감사 보고서 없다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들이 회 사의 특성인데 이것을 감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해서 해당 감사절차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실'이 아닌 '과실' 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보고서의 존재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출자확인 서도 징구했고 책임 있는 경영진이 날인한 온전한 재무제 표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회사 경영진한테는 투자주식 가치에 대해 변동이 없었는지를 꾸준히 계속해 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이 통상적인 감사절차 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여기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임. 2015년, 2016년 적시에 해당 오 류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2017년 K-IFRS9이 개정되어 도입되면서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이슈가 대두되었던 시기에 저희들이 특별한 주의를 통해서 사후 적으로 동 오류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회사에 정정공시 를 유도하였음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2014 년도에 저희들이 초도감사를 할 때도 회사의 연결재무제 표의 오류를 발견하고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등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노력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음. 아울러 저희들이 충실한 감사를 통해서 해당 오류를 선제적으로 수정했고 ○○회계법인이 감사한 또 다른 공동투자자인 코스닥 상장법인 ㈜○○이 1년 후인 2018년에 해당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기여했다는 점도 같 이 고려를 부탁드리겠음.

○ (위원) '비상장 사모펀드의 투자성격에 따른 정보 접근의 한 계로 인해서' 라고 하여 이런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했는데 '중과실' 조치는 과하다는 주장이신지?

- ▶ (진술인) 맞음.
- (위원) '비상장 사모펀드의 관련 법규로 인한 부문감사인 활용의 한계' 이것도 어쨌든 투자성격이나 법규로 인해서 한계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는지?
 - ▶ (진술인) 이것이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회사의 충실한 설명과 관계회사, 책임 있는 경영진의 성실한 날인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상황을 제 대로 전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나와 있는 날인 재무제표를 통한 대체적인 절차가 인정되는 감 사절차라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 그것이 저희들의 주장임.
- (위원) 업계에서는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한계인지?
 - ▶ (진술인) 공동투자자인 ㈜○○ 같은 경우도 회사와 동일하게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제시받지 못해서 동일한 회계오류가 있었고 오히려 이 회사보다 1년 뒤에 정정하는 상황이었음. 2015년 당시에는 외부감사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와 운용사 쪽에서 감사보고서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감사인으로써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람.
- (위원) 지금 회계사들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최소한 취했어야 될 절차가 미흡하다고 하여 '중과실' 판단을 했는 데 첫째 감사인은 PEF가 연결 대상이 안 되면 57.1%의 지분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대상이 됨. 그러면 회계 정책을 회사와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고 또 하나 PEF가 57.1%임을 감안하면 IFRS 전환 하면서 PEF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에 대한 검토가 없음. PEF도 그 투자대상에 대해서 과반수 초과하면 연결 적용 대상 그다음에 20~50이면 지분법 적용 대상, 20 이하면 금융투자상품조회서 이런 식의 검토가 있어 야 되는데 그러한 검토가 전혀 없었음. 또 하나 감사인의 감 사조서에 연결 범위 검토 부분에서 제50조제1호 사모투자전 문회사의 규약 정관을 검토한다고 기재해 놓고 정작 정관 50조에는 PEF는 외감법상 외부감사는 아니지만 외부감사 받 는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이 부분을 간과했으며 저희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어떻게 검토했는지, 한 해도 아니고, 만약 PEF 정관상의 PEF 외부감사 수검 의무를 감사 인이 알았다면 ㈜○○○○ 주식에 대한 손상을 반영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외 에도 이런 것을 종합할 때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중과실'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 ▶ (진술인)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정관의 검토를 통해서는 알서포트㈜가 이 PEF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임. 비록 정관상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고는 하나, 저희가 회사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하였고 그 렇게 질문한 상황에서 회사는 정관의 검토 목적은 주로 그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이 되어 있는 사항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관상 외부 감사를 받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회사한테 위반사항을 제시하면서 감사를 받고 있지 않느 냐고 했을 때 회사의 주장은 받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2014년 초도감사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지는 시점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사를 요청했던 상황이고 그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감사를 받지 않는 상황 에서 최선의 대체적인 절차로서 그러면 날인된 재무제표 라도 저희들이 꼭 입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항이라서 날인된 재무제표와 그 당시 주장하는 진술을 통해 저희들 이 지분법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검 토한 바 있음.

- (보고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감사인은 회계팀장과만 커뮤니케이션을 했음. 그런데 사실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재무팀장이나 CFO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분들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으며, 최소한 GP 쪽에 연락을 해 봤어야 되었을 것 같음. 그런데 저희가 기대했던 그러한 절차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과실'로 판단한 것임.
 - ▶ (진술인) 사실 정관에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과 저희가 그것을 못 봤지만 계속해서 "감사를 받느냐?", "안 받는다",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은 결과

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음. 이것이 강제법이 아니고 외감법에서 어차피 감사대상이 아니고 정관이라는 것이 주주간의 협약으로 보이는데 GP는 감사보고서를 저희한테 전달할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BS/PL만 가지고가서 날인해 주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들은 사실 정관에감사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못 본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취할 절차는 다 취했음. 그다음에 추가적인 절차에 있어서, 정관을 보고 의사결정권이누구에게 있느냐, 운용에서의 책임은 누가 있고 권한은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봤고 연결이 아닌 지분법으로 판단했었고 연결이 아닌 단순 관계회사의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회사에 대한 질문 그리고 회사의 책임 있는 CFO나 팀장의 설명 그리고 날인 재무제표를 통한 분석적 검토 외에 시간을 투입하면서 마음껏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임.

- (위원) PEF의 투자자인 ㈜○○의 경우에도 회계처리를 감사 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 했는지?
 - ▶ (진술인) 맞음.
- (위원) 진술인 주장은 감사인이 PEF를 통한 관계기업 회계 처리오류로 인해 '중과실'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례가 없는지?
- (보고자) 저희도 PEF 관련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음.

- (위원)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투자기업
 의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엄청난 손상차손을 왜 재무제표
 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 (보고자) 자본시장법과 특수분야 회계처리기준, 집합투자기구 회계처리기준서에 의하면 PEF는 투자지분을 취득원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회사가 했어야 될 것은 이 PEF가 취득원가로 표시한 재무제표를 K-IFRS로 변환한 다음에 지분법을 적용했어야 했는데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감사인도 PEF 재무제표에 투자지분이 취득원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IFRS로 전환할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것임.
 - ▶ (진술인)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드리면 회사는 비상장주식에 투자가 되었고 시가에 변동이 없다는 설명을 지속적으로 했음. 저희들한테 날인 재무제표는 주석을 뺀 상태로 BS/PL만 오면서 비상장주식에 투자되어 있고 대부분은 SPC로 남아 있다는 설명을 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믿은 것이 잘못임.
- (보고자)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감사조서상에 그런 검 토절차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임. 지분법을 적용하려면 PEF 도 IFRS로 전환하고 그 이후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임. 그런 절차가 전혀 없 다 보니까 감사절차가 부실하다고 보는 것임.
 - (진술인) 지속적으로 감사보고서가 없다는 얘기를 저희에게 했던 것 및 주석을 빼고 준 것에 대해서 감사방해를

받았다는 입장임.

- (보고자) 감사절차가 어느 정도만 되어 있었다면 저희도 사실 '과실'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음. 다만,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안 되었다고 봤음. 그래서 저희가 '중과실'로 판단한 것임.
-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반기 감사 이후에 파트너가 바뀌면서 지분법 자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회계처리를 제대로 한 것으로 되어 있음. 처음부터 바뀐 후의 파트너가 맡았으면 제대로 회계처리가 되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은지?
 - ▶ (진술인) 2017년 당시에는 IFRS9이 개정되었던 시기여서 2017년 주석에 IFRS9과 관련한 예비 주석 공시를 해야 되 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저희들은 회계 정책의 일치를 통 해서 PEF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공정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고 회사에 전달했고 그 비상장 주 식의 공정가치 평가의 중요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사절 차로 인해 동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 (위원) 혹시 GP는 직접 접촉한 적이 있는지?
 - ▶ (진술인) 접촉한 적은 없음.
- (위원) 실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투자내역을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없는 것은 맞음. 그러니까 비 상장주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회사냐, 이것을 알아봤는지?

- (진술인) 계속해서 저희들이 회계팀장한테 이 투자의 변동 내역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러한 변동은 없다고 했음.
 투자대상이 ○○○○○라는 곳은 오류수정하는 2017년에 처음 알았음.
- (위원) 여기가 비상장주식으로 알고 IAS 제39호에 의해서 평가를 안 해도 인정을 해 주니까 추가적인 절차를 안 밟았다. 그런데 설명이 되는 것이 IFRS9가 2017년에 등장하면서 알게 됐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지금 PEF가 출자한 170억 원은 보이저플러스라는 유한회사의 100% 지분임. 이 100%지분에 대해서 PEF는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IAS 제39호나 IFRS9을 적용할 대상이 아님. 애초부터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몰랐기 때문에 금융상품기준서가 적용됐다고 계속 오해를 하고 있던 것임. 여기는 연결 여부를 검토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GP, PEF가 적용대상임. 여기에서도 IFRS 전환 여부를 검토했어야되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가 '중과실'로본 주요 논거임.
- (위원) 감사인은 회사와 GP가 일관되게 비상장회사한테만 투자했다고 얘기를 하고 감사인은 그것을 믿고 공정가치회계에 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의 문제겠음. 그런데 감사조서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금감원이 과도하게 판단했다고 보이지 않음. 2014년에는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얘기했고 2015년에는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 내역이 무엇인지 후속조치(follow up)를 해야 되는데 그

것이 조서에 안 드러나 있음.

- ▶ (진술인) 회사에서는 '투자초기이고 밑에 SPC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들어오는 포트폴리오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비상장이고 투자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가의 변동이 없고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 는 설명이었고, 사실 그래서 IFRS9 이전에 이것이 비상장주식이고 아직은 시가를 다시 평가할 만큼 중요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았음.
- (위원) 2014년은 초기라고 해도 2015년, 2016년 조서에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 ▶ (진술인) 회사에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17% 이상이지만 손익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사에 질문, 그리고 GP 날인 재무제표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봤을 때 회사의 진술과 일치한 상황 하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거짓된 진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손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의심하지 못한 상황임.
- (보고자) 저희들이 볼 때는 연결범위라든가, 지분법 적용 대상 회사의 IFRS 전환 부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했음.
 - ▶ (진술인) 앞서 PEF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에도 저희가 강화된 현안을 파악해서 상세한 투자내역과 어떤 방식으로 펀드운용사가 평가했는지 상세한

회사 내역들에 대해서는 투자전략이라고 해서 아직도 제 공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임. PEF의 투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감사인이 받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PEF에 투자하고 PEF에서 상장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봐서 손상차손을 적시도 안 하고, 그런데 PEF가 관 계회사인 경우와 일반회사가 관계회사인 경우의 회계처리가 다른지?
- (보고자) 법적실체가 어떤 것인지는 회계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음. PEF가 처음에 보안유지 때문에 자료를 안 준다는 취지임. 다만, 저희는 GP의 자료를 요구한 정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동기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음.
- (위원) 마지막으로 회사 의견서를 읽어보면 ○○○ ○○○○ ○○의 매출을 해야 되는데 대외 공표되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저희가 파악하기에 회사에서는 '중과실'을 수용하는 입장임.
- (위원) 실제로 회사가 그 GP에 직접 접촉을 하고 투자내역 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려고 한 노력이 없었는지?

- (보고자) 회사 재무팀장과 CFO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음.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회계부문과 재무부문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감사인은 회계팀장한테만 문의하고 말았던 것임.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60호 『㈜기가레인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 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의 경우에는 2014년에만 해당 감사에 참여를 하였고 감사참여시 매출계정만 담당을 하였음.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와 다르게 2014년 이전인 2013년에는 IPO감사가 있었으며 이 IPO감사를 통해서 상장이 이루어 졌음. 그리고 상장이 됐을 때도 동일한 진행기준의 이슈가 있었고 동일 진행기준 매출이 있었음. 그리고 2013년에는 한공회 감리가 있었음.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는매출이 타년도와 다르게 1년 이내에 다 완성되는 단일장비. LED ICP ETCHER라는 한 가지 장비에 대한 매출인식이 있었으며,이 당시에는 손실공사가 없었음. 2014년같은 경우는 제가 감사절차를 취했을 때 매출유형 검토라든지,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검토, 매출원가율 분석, 월별

매출액 변동 등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음. 당시 기준서에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용역에 대한 수익을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1)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3)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다.', '(4)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 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 4가지로 구분 이 되어 있고 그중 (3)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회사의 진행률 측정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반도체 장비, 그것 도 단일장비인 LED ICP ETCHER 장비 1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항목이어서 일단은 장비가 1년 안에 대부분 다 착수가 되어서 완성이 되고 재료비가 전체 원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73.8%로 재료비가 가장 큰 원가동인이고 단 일장비 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하는 원가 비중은 동일 하다고 추산을 하여 재료비를 통해서 충분히 원가율을 산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임. 제가 감사를 했던 2014년 의 경우에는 단일장비이고 그 장비의 경우 1년도 채 안 되는 단기간에 착공되어서 완성되는 장비였고 그 당시에 는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공사가 한 건도 없었음. 그렇기 때문에 진행률을 측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성을 갖는 데에서는 큰 의문사항이 없었던 상황이었음. 그리고 2014 년 그전 상황은 IPO 감사를 통해 상장이 있었고 2014년 당시에 한공회 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진행기준적용에 있어서 오히려 확실한 신뢰성을 갖고 적 용을 했던 부분도 있음. 그래서 한공회 감리 당시에는 조

치가 없었고 금감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림.

- (위원) 진술인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한공회 감리 결과와 금감원 감리 결과가 상이하다는 것에 대해서 금감원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한공회 감리는 2013년에 있었음. 저희가 한공회에 확인한 결과 당시에는 진행률 수익인식이 전체 매출액 대비 굉장히 미미한 금액으로 당시 총매출액 560억 원 중 14억 원밖에 안 되어서 넘어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당시에 한 공회가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적정하다고 인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림.
 - ▷ 진술인이 퇴장함.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61호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 육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임. 지난 2월8 일에 분식회계와 관련한 회사의 전직 임직원에 대한 형사 소송 판결을 통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위반되 지 않았거나 고의가 아닌 점이 밝혀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전직 임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음. 제가 증선위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 도 전직 임직원 및 회사에 대한 검찰고발이나 통보는 적 절하지 않다는 것임. 회사는 2017년 10월 검찰에 전직 임 직원들에 대한 기소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 해당하여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어 회사는 이미 한 차례 실질적 제재를 받았음. 따라서 동일한 사안으로 회사에 대한 검찰고발이 또 다시 이루어진다면 이는 회사가 동일 한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상 이중처벌을 받는 결과가 되게 될 것임. 따라서 회사에 대한 검찰고발이 이루어지지 않 더라도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79억 원이 부과 되고, 감사인지정 3년과 임원 해임권고까지 내려지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 고 있음. 또한, 재무제표의 수정공시 등으로 시정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사항이 대부분 해소되었고 재발할 여지도 없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람. 그동안 회사는 경영혁 신과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하였으며, 2018년 금감원 직권지정 1년을 받 았고 2019년부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지정 신청을 통해 202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지정감사인으로 부 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 회사는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본 증선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회계처리와 관 련한 어떠한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 (진술인) 저는 형사소송을 담당하였던 법무법인 ○○의 ○ ○○ 변호사임. 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첫 번째로 형사사건 진행경과임. 이 사건은 2017 년 7월14일 ○○○의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시됨으로 써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음. 그리고 3개월 뒤인 2017년 10월1일 전·현직 임원진에 대해 기소가 되었음. 법 원은 그다음 달인 11월부터 바로 재판에 착수해서 3년이 넘는 2020년 11월2일까지 50회가 넘는 재판을 한 것임. 분 식회계 사건으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재판 을 한 것은 드문 예임. 그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과정을 통 해서 획득한 자료뿐만 아니라 금감원으로 부터 받은 자료, 그리고 금감원에서 받은 의견서를 검찰의견서의 형태로 변형해서 모두 제출하였고 거기에 대해 변호인들과 공방 을 벌였음. 재판부는 2020년 11월에 재판을 종결하고 3개 월 후인 2021년 2월에 판결을 선고하였음. 3개월 동안에 각종 주장들을 검토한 뒤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임. 다 음으로 분식유형 12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른바 선급금 관련 분식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임.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임. 하나는 객관적으로 회계기 준에 위반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전 현직 임원들에게 회 계기준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임. 법원은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〇〇〇가 채택했던 대금지급기준이 ㅇㅇㅇ가 수행한 공정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지만 비로소 회계기준 에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 이유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하도급업자가 수 행한 공사업무에 대한 대금지급액은 누적발생원가에 포함 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대금의 명칭이 '선급금'이냐, '착· 중도금'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임. 왜 이런 주 장을 했느냐 하면 검찰은 이 명칭이 '선급금'이기 때문에 실질적 선급금이라는 잘못된 전제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임. 두 번째 법원의 이유는 검찰이 '입고기준' 을 반영한 내역이 회계분식에서 산정한, 입고기준에 따라 회계분식에서 산정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음. ○○○가 방산협력업체 로부터 입수해서 정정공시를 했는데 그때 입수한 진행률 에 관한 자료가 실제 공사수행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음. 따라서 법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크게 7가지 이유를 들고 있음. 첫 번째로는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에서는 중간에 회계기준을 유리하게 바꾸는 데 ○○○의 경우 1999년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7년 8월 정정공시까지 모두 일관되게 대금지급기준을 적용해 왔다 는 것임. 그리고 중간에 외부감사인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대금지급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ㅇㅇㅇ 관계 자들과 논의한 끝에 모두 정당하다고 승인하였음. 그리고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매출을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 다면 연말에 재료비 집행이 집중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고친 것이 없음. 그리고 하도급업체에 나간 것은 방위사업 청과의 계약 그리고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 따라 전부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음. 두 번째로 검찰에서 문제 삼은 것이 경영회의에서 최고경영자들이 매출목표를 달성하라고 독려했는데 이것이 분식회계의 증거라고 주장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경영진에서 당연히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영에서의 목표달성 독려가 분식회계의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음.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아주 구체 적으로 판단했음. 검찰이 구체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 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5년말에 수리온 2차 양산자금 642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는데 이것이 바로 매출증대를 위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급 했다고 검찰이 주장하자 법원은 당시 하도급업체가 못 받 은 미지급금이 여러 곳이었는데 영세한 업체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노력을 했고 그것이 안 되어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것임. 따라서 회계분식의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2016년말과 2017 년 1분기에 수리온 3차 양산과 마리온 헬기에 대해서 2016년 12월27일에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바로 거액의 돈 이 나갔으므로 이것이 선급금으로 나가서 이것이 분식회 계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헬기는 특수하게 선 품목, 그러니까 계약 전에 미리 품질보증을 받아 선이행에 착수했으며 실제로 2016년 1월부터 착수했기 때문에 이렇 게 돈이 나간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않았음.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제일 논란이 되었 던 2016년 해외 사업 자체자금 지급과 관련해서 검찰의 경우 원래 계획에 따르면, ○○○ 자체 계획이 아니라 방 위사업청과 ㅇㅇㅇ가 맺은 실행계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16년에는 4,767억 원의 원가가 투입되도

록 되어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기로 한 것은 1,000억 원에 불과하므로 ○○○로서는 나 머지 돈을 다 투입해야지만 실제로 실행계획서에 따른 사 업이 진행이 가능했고 따라서 ○○○가 KF사업과 관련하 여 많은 돈을 지급한 것은 이러한 사업일정 준수를 위하 여 방위사업청과 합의한 실행계획서에 맞추어 자금을 집 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경영계획은 1년 전에 수립되는 데 경영계획 수립 당시에 회계분식을 의도했다고 주장했 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음. 두 번째로 이른바 자재 출고 조작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재료가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 작되었는지의 여부임. 여기에 대해 법원은 문제가 되었던 부품들은 모두 사업 별로, 또 헬기 별로 처음부터 발주가 되었고 입고가 되었고 재고관리가 되었고 출고가 되었다. 그중 아주 극히 일부가 나중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전 용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전용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처음에 재료가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변경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고 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음. 왜냐하면 전용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 방위사업 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전용된 예가 비슷한 사업의 다른 회사나 다른 사업을 위해 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음.

▶ (진술인)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회계사임. 금감원의 지적사항 23가지 중 검찰이 기소한 것은

[1-1] 협력업체 착·중도금 지급 등 12개 항목임. 앞서 ○ 변호사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12개 항목 전부에 대하여 ○○○의 회계처리가 회계기준 에 위반되지 않았거나 일부는 회계기준에 위반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음. 검 찰이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11개 항목은 대다수가 검찰기 소 항목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들이고 금액적 측면에서 도 [1-1]항목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1-10]항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순이익을 줄이는 역분 식에 해당하는 등 그 중요성, 고의성 여부, 기소유지 가능 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고 설령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은 달라 지지 않았을 것임. 이 사건은 검찰이 먼저 자체적으로 수 사를 개시하여 결론을 내리고 금감원이 검찰 주장에 따라 가는 특이한 형태의 사건임. 그 결과 금감원은 〇〇〇의 정정공시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여 1단계 감경조치를 하면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서 회계위 반액은 입고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음. 구체적으로 [1-1] 협 력업체 착·중도금 지급 관련 안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1호 문단31의 해석 및 적용. 즉, ○○○가 선택한 대금 지급기준과 검찰 및 금감원이 주장하는 입고기준 등 어떠 한 기준이 협력업체가 수행한 원가를 계약원가에 잘 반영 하였는지 하는 것이 핵심쟁점인데 법원은 ○○○가 선택 한 대금지급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반한다고 보 기 어렵고 검찰 및 금감원이 주장하는 입고기준에 따라 회계분식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금감원은 ○○○가 회계분

식을 목적으로 자체 자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은 그러한 자금 지급에 회계분식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1-8] 해외 LRU 임 의출고 관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31(1)단서에 따라 LRU가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재료인지가 핵심 쟁점인데 법원은 LRU가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검찰이 2017년 인지수사를 진행했으므로 지금은 수사의 단서로서 정부 고발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음. 검찰은 수사 이후 ○○○는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고 前임직원들만 기소를 하였으며 이 또한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음. 이 측면에서도 ○○○에 대한 검찰고발은 실효성이 없어 제 외될 필요가 있고 ○○○에 대한 검찰고발은 오로지 前임 직원 형사소송 2심의 당사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효과만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진술을 마무리 하 겠음.

● (진술인) 前대표이사 ○○○의 대리인 ○○ 변호사임. 이사건은 2015년 감사원에서 방위사업청을 감사한 후에 수리온헬기에 원가 반영한 기술이전비 547억 원을 ○○○에인정해 준 것이 부당하다고 하며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로부터 이 돈을 회수하라는 통보를 하게 됨. 그런데 회사는 이것은 당연히 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회사에서 승소하였음. 그러자 감사원에서 회사가 반발했다는 이유로 ○○○에 대해서 정밀감리에 들어갔고 당시 대표이사는 대우출신이었는데 그때 대표이사나 회사에 불만을 품은 내부

직원 그리고 협력업체 등에서 음해성 루머를 유포하고 투 서를 하였음.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것은 방산비리에 해 당하는데, 그 내용과 前대표이사인 〇〇〇 시절의 횡령혐 의에 대해 수사를 했음. 금감원에 ○○○에 대한 회계감 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2017 년 7월에 이 사건이 장기화되고 방치한 것에 대해 부담이 된 검찰이 방산비리에 대한 확인차 회사에 대해 본격적으 로 수사를 하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금감원이 가지고 있던 회계 감리자료를 입수해서 수사와 감리를 병행하게 됨. 그런데 검찰은 결국 밝혀내고자 하는 방산비리는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기소를 하지 않았음. 그래서 회계분식이 라든지, 기타 횡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하게 되었음. 당시 검찰과 금감원의 직원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선급금 계 정에 착안했고 회사는 설립시부터 협력업체에 지급한 대 금(착·중도금)을 결산시까지 선급금 항목으로 회계처리하 고 수익으로 인식해 왔음. 그런데 이 항목 중에는 선급금 과 후급금의 성격이 혼재하는데 회사 담당자도 대금지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것이 잘못인지에 대해 전혀 인식 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사 당시에, 이것이 쟁점화되지 않고 기소가 되었던 사안이었음. 결국 前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분식의 동기가 없다는 관점과 더불어 이것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으 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당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이라든지, 대주주인 ○○○에서 회계 진단을 의뢰한 ○○ 회계법인에서 모두 다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 단했음. 그리고 당시 회사가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이 실제 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공계상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었음. 단지, 수익인식의 시기 문제였을 뿐임. 그래서 검찰과 금감원은 이 동기에 대해서 성과보수를 잘 받기위해서 분식을 한 것 아니냐는 동기를 만들어낸 것임. 결국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물론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계감독선진화 차원에서 제재보다 계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건 자체는 검찰 기소시 이미 회사의 주가가 급락해서 투자자들의 많은 혼동이 있었음.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는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바람.

- (위원) 지금 재판에 직접 참석하셨던 두 분 변호사님과 회계 사님의 말씀은 검찰이 어쨌든 금감원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하고 기소했는데 금감원의 지적사항은 전체 23개 항목인데 ○○○의 주장은 23개 항목 중 검찰이 기소한 12개 항목 전 부에 대해 1심은 전부 무죄이고 나머지 11개 항목은 기소하 지 않았다는 것인지?
 -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이 부분이 금감원과 상충되는 것 같음. 금감원 주장은
 23개 항목 중 법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한 12개 항목도 문제가 있고 나머지 11개 항목도 전부 문제가 있다는 내용임.
 - ▶ (진술인) 수사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검찰에 파견 나가서 회사 직원들을 물어보고 다했기 때문에 그때 검찰에서 이 23개 항목에 대해 전부 검토해서 그중 검찰이 "이 부분은

분식에 해당된다." 하는 것만 기소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 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람.

- (위원) 어떻게 보면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서 명확하게 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과 증선위가 판단하는 것은 상이할 수 있고 자료 범위도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총 23건 중에 검찰이 기소한 것이 12건이고 나머지 기소가 안 된 것이 11건인데 이 11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 조사를 했고 기소요건이 안 되어서 12건만 기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감원, 동의하는지?
- (보고자) 우선, 검찰에서는 12건을 기소했음. ○○○에서는 당시 조사나 금감원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13건에 대해서 정정공시를 했음. 다만, 금감원은 전체 자료를 봤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 안 된 부분도 저희는 다 들여다봤음. 그리고 중첩되는 부분까지 다 합치면 19건 정도가 되는데 4건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에, 2018년 이후에 지적한 사항들임.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가 안 된 부분도 포함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음.
- (위원)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된 자료와 금감원이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추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음. ○○○쪽, 그런 추가 자료가 존재한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 ▶ (진술인) 저희들이 15번에 걸쳐서 금감원에서 저희들을 조

사하여 검찰에 제출한 자료,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의'라고 금액을 부과한 자료를 수차례 요구를 했음. 그런데 그것은 금감원 측에서 회사에 제시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음.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음. 조금 전에 금감원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넘어간 것이 검찰이 다 봤는데 한 3~4건 정도는 못 봤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보면 회계처리 계정조정부분만 검찰이 보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검찰에서 인식을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기소를 해서 고의성이 강하다고 했던 부분은다 가져갔음. 대부분 검찰이 다 알고 있던 내용임. 금액이얼마 안 되는 소수 건, 회사 자체에서 회계감사인의 권고를 받아서 회계처리를 변경한 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보지 않았지, 나머지 부분은다 알고 있음.

- (위원) 그리고 법원이 판결한 것은 2013년 이후 회계분식 관련된 것이고 금감원에서 감리한 것은 2011년~2012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쪽, 2011년~2012년 건이 법원판결 하는데 있어서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 ▶ (진술인) 금감원에서 처음하신 것은 2013년~2016년을 한다고 고지하시고 감리를 하셨고 그동안 감리를 하시면서그 부분이 앞 연도까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을 한 것임. 새로운 사안이 나와서 2011년까지 간 것은아님.
 - ▶ (진술인)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는데 前대표이사

인 ○○○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이 2013년부터임. 그래서 2013년부터 문제를 삼은 것임. 그전 2011년~2012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 온 것임.

- (위원) 그래서 2011년~2012년에 CEO였던 ○○○도 제재 안 건에는 올라와 있는 상황임. 금감원, 2011년~2012년 자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2011년~2012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처음 얘기한 대로 2013년~2016년까지 감리를 진행하다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임. 그중에서 저희가 추가 지적한 다른 건들이 또 있음.
- (위원) 회계처리 기준과 '고의' 동기판단, 법원이 판단한 것이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KAI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서 적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 (위원) 가장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선급금 관련되어서 ○○
 ○쪽에서는 1,58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금감원이 추정한 것은 6,521억 원으로 거의 4배의 차이가 남. 금감원쪽에서 이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우선, 2013년 추정액이 1,857억 원인데 ○○○가 제시한 추정치에서는 ○○사에 대한 지급액이 빠져있음. 그리고 ○○○가 설명하기로는 FA-50 후속양산 오류수정이 179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

에 이 부분이 맞다면 이 부분은 제외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음. 그래서 2013년에는 1,570억 원 정도로 추정됨. 그리고 자체자금 추정액은 누적기준으로 계속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1,170억 원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본사 쪽으로 신청해서 받는 경우에는 자체자금이 해소되는 방식임. 그래서 추가로다시 선급금이 지급되면 그 자체도 자체자금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임.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있음. 크게 보면 2017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시한 추정치는 1분기 기준 추정치임. 금감원이 제시한 것은 반기 기준 추정치임. 이런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음.

- (보고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음. ○○○가 수정한 자료는 회사가 자체자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불용예산을받은 경우에는 자체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계상하였음. 즉, ○○○는 순액으로 계상했고 저희는 회사가 자체자금을지급한 행위를 기준으로 작성된 측면이 큰 것으로 기준의차이임.
- (위원) 그러면 두 기관의 기준이 상이한지?
- (보고자) 맞음.
 - ▶ (진술인)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금감원이 이렇게 수치를 작성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임. 저희들은 회사 장부에 있는 기준으로 실질자료들을 작성을 했는데 금감원은 저희들에게 공개를 안 해 줌. 그래서 이 자료를 공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겠음.

- ▶ (진술인)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4명이 검찰에 50일간 조사를 받고 계속 거기에서 작업을 했음. 그런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회사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자료가 신뢰성이 없다고 계속 검찰에도 이야기를 한 부분임. 그런데 그 부분을 금감원은 그대로 갖다가 쓴 경우여서 이런 자료들은 정확하게 주시면 회사가 맞춰볼 수가 있겠음.
- (위원) 가장 좋은 것은 협력업체 진행률을 활용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쉽지 않아서 ○○○쪽에서는 착·중도금 기준, 일명 대금지급 기준을 활용했고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입고 기준으로 활용을 하다가 그 두 개의 차이가 결국에는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 결국 입고기준으로 하면 기간귀속 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음. 이 건에 대해서 금감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일단 예로 든 것이 1개의 제작부품을 받는 경우로 한 것임. 이런 것들은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가능한데 양산 단계에서는 여러 개 부품이 완성될 때마다 납품되어서 오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크지 않음. 그리고 회사가 정정공시 당시에 사용했다고 하는 진행률 기준방식이 발생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자료도 아니고 이후에도 저희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님.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료를 기초로 속칭 회사가 얘기하는 착·중도금 대금지급 기준을 비교하는 것이라서 일단은 신뢰하기가 좀 힘듦.

- (위원) 이렇게 진행률 기준으로 수치가 나올 수 있다면 진행률 기준으로 하지, 왜 착·중도금 기준으로 했는지? 이 진행률 기준은 언제 도출이 된 것인지?
 - (진술인) 저희들이 진행률 기준을 검토한 것은 정정공시 때부터 한 것은 맞음. 통합시점부터 해서 ○○○가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회사가 아니었음. 그 당시 ○○○○은 저희들과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진행률 대 원가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음. 추후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으니 제출을 안 하면 그 불똥이 자기 회사로 튄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신속하게 저희들이 제출을 했음.
- (위원) 그러면 진행률 기준 공사원가는 2017년에 도출된 숫자인지?
 - ▶ (진술인) 도출된 숫자이고 저희들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달 정도 남겨두고 이 작업을 하라고, 2017년도부 터 정정공시를 하라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 셔서 저희들은 '협력업체 대표이사님 날인을 해서 진행률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받은 진행률을 회계법인 이 감사할 때 일일이 확인을 했음. 그렇기 때문에 이 진 행률이 터무니없는 자료가 아니고 그 시점에 적절한 자료 라고 판단을 하고 있음.
- (보고자) 우리나라 전체 사업을 보더라도 외주부품에 대해서 진행기준을 쓰는 것은 손에 꼽음. 지금 회사에서 진행률 기

준 썼다는 것은 업체가 20개 되는데 예를 들어 ○○○○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270개가 있음. 그러면 한 회사에 대해서 274개를 진행기준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음.

- ▶ (진술인) 만일 그렇다면 저희들이 업체의 진행률을 받은 이후에 금융감독원이 협력업체의 진행률을 다시 달라고 해서 받았음. 그러면 그런 내용이 안 맞으면 다시 정정공 시를 하든지 안 맞는다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도 없 으셨음.
- (위원) LRU 관련되어서 별도로 제작된 것이냐, 별도로 제작되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임. 그래서 ○○○쪽 자료—를 보면 해외LRU의 경우에 거의 별도로 제작된 것으로 범용 쪽으로 사용한 것은 거의 1%미만밖에는 안 되는데 금감원 자료 보면 완전히 다름. 연도에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는지?
 - ▶ (진술인)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가 만들고 있는 항 공기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음.
- (보고자) 일단, LRU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음. 별도제작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기준을 쓰는 대상회사 그 건은 아님. 과거에 ○○사를 제외한 해외협력업체 건임. 그전에 회사는 그 부품을 사오면 입고한 다음에 생산에 투입될 때 원가처리를 했음. 그렇게 했는데 금번

금감원 지적에서 프로젝트 별로 이상배치를 한다고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이것을 입고되는 시점에 인식했다, 그래서 별 도로 제작되니까 사실상 이것도 특수제작 성격이 있다고 하 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임.

- 【진술인) 그것도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음. 국내든 해외든 LRU 업체는 동일함. 그때는 저희들이 허락을 받아서 다 했음. ○○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에 일반 업체들에 대한 LRU도 있을 수는 있음. 그런데 그 LRU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저희들이 진행률을 인식할 수가 없음. 그래서 회사는 출고기준으로 가져간 부분이고 LRU를 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회계기준에 별도로 제작했다는 그 문구에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뭐가 안 맞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일단은 LRU라고 하면 엄청난 특수제작품처럼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별도제작 하고 입고기준, 출고기준 얘기하는 해외 방산협력업체의 납품물들이 어떤 성격이냐면 금액이 제법 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심지어는 어댑터 9,380원, 볼트 4,097원 이런 것도 별도로 제작했다고 쓰는 것임.
- (위원) 아까 법원이 12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고 하셨는데 그 표현을 보면 IFRS기준을 꼭 위반했다고, 법원에서는 그런 고유의 표현을 써서, 그렇다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꼭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역으로 얘기하면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음. 그래서 양면을 다 가지고 있고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회계분식에서 완전히 회

피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도 같음. 일단, 첫 번째 대다수의 지적사항을 금감원은 '고의'라고 판단하고 있음. 물론 감리 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 로는 다 '고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고의'에 대한 논 거를 금감원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1심이기는 하지만 판결에서 일단 인용되었다는 것은 증선위 에서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함. 첫 번째 가장 중 요한 '고의' 동기판단에 있어서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에 더 해서 금감원이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주장해 주 시고, 그리고 ㅇㅇㅇ측에서도 그런 것에 근거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람. 그것은 동기판단에 대한 부분이 되겠 고, 그다음 23개 항목을 각자 입장에서, 뭉뚱그려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돈이 100억 원이 나갔는데 그중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ㅇㅇㅇ가 보기에 기집행된 부 분이, 지금 전체가 기집행이라고 상당부분 주장하시는데 기 집행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금 감원은 금감원대로 근거를 제시해서 얘기해 주시고 판결문 에 있는 것도 각 문항마다 넣어주시고 그 외에도 추가로 주 장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음. 그런데 지금 11개 항목에 대해 정정공시했는데 정정공시를 했다는 것은 일단 회사가 좋든 싫든 수용해서 재무제표에 받아들인 것이니까, 그것은 다툴 필요가 없음. 23개 항목 중에서 5개 는 동의한다고 정정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 시키려 는 것임. 그러니까 논의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 각자가 주장 할 내용을 주장 해 주고 그 주장에 더해서 법원에서 인정해 준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적어 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 해서는 팩트가 이미 검증되었다고 보여 따로 거기에 대해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음.

- ▶ (진술인) 금감원과 동일한 부분을 정정공시한 부분이 있지만그 부분을 금감원은 전부 '고의'로 본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동기 부분은 제일 윗 단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다음에 각 개별항목으로 들어와서 정정을 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추가해서 인용해 주시고, 검찰이 기소한 23개 중 12개이므로 11개 정도남는데 그중에는 정정공시를 해서 빠지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임.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저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음. LRU Lead time 30개월, 24개월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금감원이 얘기한 대로 볼트, 너트도 있음.물론 중요도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양면이 다 있다는 것은 팩트임. 그래서 본인 주장만 하지 말고, 그것을 다 주장해서금액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임. 법원에서 고의로 회계분식을 안 했다고 해서 금감원이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약간 측면이 다른 것 같음.
- (위원) 협력업체 중도금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 있는 것 같음. 출고기준과 입고기준 이것도 전용건수도 2%로 굉장히 낮음. 이 팩트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이것에 동의하면 동의를 해 주셔야 함. 반대되는 증거만 제시하지말고 총론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맞으면 맞다고 해야 하는 것임.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 두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는 대금지급 기준에 의한 협력업체의 진행정도 반영 회계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저희 감사인이 보는 협력업체의 진척도 반영 회계처리의 논란은 결국 두 가지 로 판단됨. 첫째는 이것이 회계기준서상 규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준서 규정에 따라 어떻게 합리적으 로 협력업체의 진척도를 측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임. 이 두 가지 논란에 대해 감사인이 생각해오고 주장해 온 네 가지 입장과 이 각각에 대한 금번 사법부의 판단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감사인은 기준서 문단 31에 따라 협력업체가 수행한 공사를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 라는 입장이며 법원은 '하도급 업자가 수행한 공사 부분 에 대한 대금지급액은 "누적발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얘기했음. 결국 저희의 입장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음. 둘째, 그렇다면 수행한 정도를 어떻게 측 정하여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하여 〇〇〇는 설립 이래 일관되게 대금집행기준을 적용하였고 법원도 '회사 가 과거에 계속적으로 적용한 대금지급기준(원가인식)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 렵고,'이렇게 얘기를 했음. 즉, 대금지급기준도 어느 정도 기준서에 부합한다는 뜻임. 셋째, 정정공시 시점에 저희가 보다 정교한 수행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로부터 회신 받은 진행율 정보를 이용하였고 법원의 판단은 '방 산협력업체의 진행율을 고려한 정정공시 내역보다 입고기

준이 방산협력업체의 공정수행 정도를 상대적으로 적절하 게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얘기 했음. 다시 말해 회사와 감사인이 정정한 방산협력업체 진행율이 입고기준보다 더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뜻임. 네 번째, 입고기준은 회계기준서에 부합하지 않고 법원에서 도 '입고기준에 따라 회계분식액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기 준에 부합한다고 확언하기 곤란하다.'고 얘기했음. 결론적 으로 4가지 모두 감사인의 입장과 동일한 결론을 사법부 에서도 내려주셨음. 실제로 저희가 글로벌 업체들에게 협 력업체의 진척도를 반영하는 방법을 문의하고 연차보고서 를 확인한 결과, 그리고 감사인도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음. 첫 번째는 협력업체로부터 진행정도의 자료를 입수하 는 방법이며, 둘째는 수행정도를 고려한 지급청구금액. 즉, 수행정도를 반영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금액을 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임. 셋째는 협력업체의 진행정도를 납품일 정과 생산주기 등을 고려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임. 결론적으로 ㅇㅇㅇ의 기존 대금지급 방법은 3가 지 방법 중 2번과 유사하며, 정정공시한 방법은 1번 협력 업체의 진행정도 자료입수하는 방법과 유사한 것임. 따라 서 ○○○가 쓰고 있는 방법이 동종업체에서 쓰고 있는 방법 중 하나였던 것임. 대금지급기준 원가반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는 설립 이래로 일관되고 계속성 있게 적용하였음. 당사는 방산업계의 특성상 발주처인 방사청 의 대금집행이 업체의 실제 작업진척도보다 늦게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이 있었고 실제 방사청의 자금집행은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이 계약내용 보다도 늦어지는 관례 때문에 ㅇㅇㅇ가 협력업체 대금지급을 원가반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적용가능한 최선책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 고 있음. 대금지급은 기본적으로 수행정도를 고려한 지급 청구금액(progress billing)으로 업체의 진행정도와 유사한 틀에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함. 2017년 감리과정에서 2016년 초대형사업 개시로 인해서 대규모 착수금 지급이 있었고 이것이 협력업체 진행율과 큰 차이가 발생하여 ○○○는 작업정도를 더 잘 나타내는 '협력업체 진행율 회신기준'으 로 수정하였으며, 이는 외부증거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 이고 신뢰성이 높은 정책으로 수용하였음. 협력업체 진행 율 회신기준은 이론적으로는 수행정도를 가장 잘 반영하 는 방법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금감원은 2가지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하나는 협력업체는 신뢰성 있는 진행율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총예정원가 산정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총예정원가는 총도급 금액과 이익률만 알면 산정 가능함. 협력업체들은 체계개 발 때부터 공동개발업체들이며 방산 특성상 이익률 자료 를 갖고 방사청과 협상을 해서 계약을 수주하기 때문에 이익률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임. 따라서 계 약을 수주했다는 얘기는 도급금액이 정해졌을 것이고 따 라서 총예정원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함. 또한, 금감원은 2017년 반기 검토보고서와 기말감사보 고서의 작성시 저희가 활용한 협력업체 진행율 자료는 적 정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2017년 연중에 수정하기 위해 서 2016년 이전 업체진행율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2017년 중에 받은 것이라도 언제 받은 것은 인정

하고 언제 받은 것은 인정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또 하나 금감원은 사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기준서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기준서를 잘 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보고기간은 기준서에서 는 거래 및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시점에 실 제 존재하였던 정보이고, 그 정보가 재무제표를 발행할 때 당시에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이면 정정할 수 있는 요 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둘 다 요건을 갖춘다 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음. 마지막 입고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금감 원이 주장하는 입고기준은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첫째는 기준서의 대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진행기준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또한 협력업체들은 신뢰성 있는 진행정도 측정이 가능한 업체임. 셋째는 수정할 당시 시점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 한 정보이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이용할 수 있었던 정 보였음. 네 번째, LRU는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제작 품이 명백하며 그 이유는 ○○○와 협의된 설계에 따라 제작·발주되어 ○○○에만 납품이 가능하고 타처에 판매 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다섯 번째는 LRU는 거의 대부분 장기간의 Lead Time(10~28개월)이 필요하고 만약 입고기 준시 협력업체에서 수행된 업무가 입고 전까지 진행율에 반영되지 않아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됨.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협력업체의 진척 도를 반영하여 진행율을 반영하는 것이 기준서에 따라 수 행한 정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법원에 서도 대금지급기준이 회계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금감원이 얘기하는 입고기준이 회계기 준에 부합한다고 확언하기 곤란하며 즉, 입고기준은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음. 따라 서 저희는 이번 조치금액에 대해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두 번째, 작업진행정도의 반영은 추정에 대한 것 으로 기준서상 측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대금지급조건이 작업진행정도를 반 영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중과실'로 볼만 큼 감사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됨. 이것과 관련하여 내용에는 없지만 부 연설명을 드리면 대금지급기준은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협력업체 진척도 인식 방법 중 하나임. 방 산 업종의 고유한 진척도 인식 방법으로써 대금지급기준 자체가 GAAP이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였음. 또한, 감사 인이 감사수행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인 현행 회계감사기 준에서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위험 영역을 식별하고 그 위험 영역에 집중하여 감사하는 위험 기반접근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저희는 회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을 듣 고 질문과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총예정원가의 산정과 변경, 또는 발생원가의 프로젝트 간 대체 등을 중점영역으로 판단하여 한정된 시간의 감사시 간을 이곳에 집중해서 사용했음. 또한, 통상적으로 감사인 으로서 회사에 모든 회계정책을 매년 재검증하지는 않음. 감사인으로서 단기감사 수행시 정기에 쓰인 회계정책에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취해 야 할 절차이고, 저희는 ○○○가 업종의 상황에 맞는 정

책을 설립 이래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어 이를 매년 확인하고 조서화 하였음. 이를 통해 합리적 확신을 갖고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해 대금지급 회계처리가 회사에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감사인이 모든 전문가적 판단영역을 하나하나 문서화하도록 감사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감사인으로서 주의의무나 절차를 현저히해태했다는 부분. 즉 '중과실'조치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셨으면 함. 저희는 ○○○가 2016년 중에 창사이래 최초로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이로 인해서 대금지급회계처리가 기존 회계정책의 한계로 판단되어 즉시 2017년 연중에 협력업체 진행율 기준으로 변경해 수정공시한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함.

▼ (진술인) 저는 차기군단 UAV 무인정찰기 예상손실 미인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음. 금감원에서는 차기군단 무인정찰기와 관련해서 2012년말의 손실사업인데 2013년과 2014년에 충당금을 나누어 인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먼저, 저희 회계법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계약 자체는 2012년 12월28일에 체결된 계약임. 따라서 정상적인 감사절차로는 이것이 손실사업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일단, 회사는 2012년 당시에 매출과 비용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음. 또한, 계약체결 사실및 예정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인에게 제시하지 않은 상황임. 다음에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발투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지, 이것이 손실사업이라는 등의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임. 또한, 법원에서도 GAAP 위배와 관련해서 이 건이 회계분식의 범위로 예상

손실의 일부만을 2013년에 비용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실 등 일부만을 손실로 인식할 때 2014년경 UAV 사업의 PDR(기본설계심사)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기로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즉, 이것이 추정의 문제이지, 정확하게 GAAP위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음. 법원에서 조차 이것이 회계상으로 명확하게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하였다고 보고 '중과실'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음.

- (위원) 평소부터 주장하던 ○○의 입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고 얘기하신 것 같음.
 - ▶ (진술인) 3년 전에 금감원 문답서에서도 그랬고 감리위원 회 때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음.
- (보고자) 다른 것 같음.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그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회계법인은 3년 전부터 일관되게 전부의 내용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생각이 똑같은지 아니면 판결을 보고서 역추적해서 반영한 것이냐,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임. ○○회계법인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들을 주시기 바람.
 - ▶ (진술인) 저희가 2020년 11월 감리위원회에서 제출했던 자

료를 그대로 제출하겠음.

- o (위원) 금감원 지적사항 중 '중과실'이 11건인데 지금 진술인 은 그 11건 '중과실'에 대해서 다 변론을 하셨는지?
 - ▶ (진술인) 그렇지 않음. 11건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았고 첫 번째 일단 선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타 사항중 1 건을 설명 드렸고 저희가 설명 드렸던 건은 법원에서 판 결이 나오면서 명확한 GAAP 위배가 아니라 판단이나 추 정의 문제라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고해 주십사 하여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음.
- o (위원) 금감원에서 23건 중 '중과실' 11건으로 되어 있고, 11 건 중 5건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셨는지?
 -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6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음. 결국 선급금 관련해서 대금집행기준. 일명 착·중도금이 차선 책으로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세계적인 업체들도 GAAP 상 대금지급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음.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음.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이전에는 진행정도 기준으로 왜 안 하셨는지?
 - ▶ (진술인) 과거에 진행정도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각 협력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임.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까지는 협력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2019년부터는 협력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 ▶ (진술인) 일단, 사회적으로 분식 이슈가 크게 되면서 ○○
 ○에 대한 자료제공이 가능했고 ○○○가 2012년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위치와 2016년, 2017년 당시의 ○○○ 규모 는 굉장히 성장을 했음.
- (위원) 회계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협력업체 진행기준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진술인은 협력업체가 제출한 진행율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는지?
 - ▶ (진술인) 저희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받기 위해서 대부분 의 업체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일단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접수하고 이와 관련되는 Back Data라든지, 이런 것을 입수하고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 자료를 신뢰하려 하고 있음.
- o (위원) 그러면 하청업체가 제출한 진행율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지?
 - ▶ (진술인)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

- o (위원) 금감원, 동의하는지?
- (보고자) 대표이사의 직인을 받아서 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 도 일반적인 감사절차에서 저희가 받는 외부조회와는 동일 한 법적인 의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수준이 아님.
- o (위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수익인 식기준은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 ▶ (진술인)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위원) 회사는 진행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어쨌든 대금지급이 진행기준을 잘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에 대금지급을 반영했다는 것이 되는지? 그러면 대금지급기준이 진행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금감원은 진행기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음. 그러면 이 사건이 있었던 2011년부터 2017년 내지는 집중적으로 2013년 내지 2015년의 대금지급에 비정상적인 대금지급이 있었는지? ○○회계법인은 그것에 대해서 확인 했는지? 그냥 대금지급만 되면 무조건 수익정도를 고려한 지급청구금액이라고 생각했는지?
- (보고자) 일단 조서상 확인된 것은 없음.
- (위원) 대금지급이 어떻게 수익정도를 고려한 지급청구금액
 인지? 통상적으로, 수익정도를 고려한 지급청구금액이 되니까 돈을 준 거고 그러니까 대금지급이 수익정도를 고려한

지급청구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음. 그리고 세계 유수기업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는 독립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뭔가 그것에 대한 것이 있는 것임.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대금지급기준을 수익정도를 고려한 지급청구금액이라고 할 수 없음. 지금 금감원에서는 그 시점에 너무 많은 지급이 있었다는 것임. 물론 그중 100이 나갔으면 50은 수익정도를 고려한 지급청구금액에 의한 것일 수 있는데 지금 ○○회계법인은 그것에 대한 것이 있는지? 법원이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대금지급이 수익정도를 고려한 지급청구금액이라는 것을 뭔가 개연성을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거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금감원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임.

- ▶ (진술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 금지급기준하고 협력업체에서 진행도를 받아서 한 기준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대금지급기준이 더 적음.
- (위원) 어쨌든 저는 대금지급기준 좋다고 보나 그런데 뜬금 없이 '입고기준'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또 헷갈리는 것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입고기준?' 이렇게 되는 것임.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논할 부분이고, 그래서 "대금지급기준 =progress billing" 저는 동의하지 않음. 거기에는 무언가 개연성이 있어야 함. ○○회계법인은 회계전문가이니까 금감원이 이렇게 얘기할 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함. 어떻게 대금지급기준이 수익정도를 고려한 지급청구금액인지? 그것은 둘이 뭔가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고리가 없기 때문임.

- (위원) 금감원에서는 무조건 부인하는데 ○○회계법인이 대금지급기준이 수익정도를 고려한 지급청구금액이라고 볼 수있는 근거와 논리, 팩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람. 그러면 회사 것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고, 협력업체로부터회신 받아서 협력업체의 진행율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지금○○회계법인에서는 당연히 사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금감원은 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 (보고자) 우선, ○○회계법인에서는 계약 당시의 이익률을 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초기예정원가는 매분기마다계속 변함.
- (위원) 제가 그것을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함. 그것은 협력업체가 시스템을 갖고 있어 프로젝트가 100개 있는데 100개별로 원가를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음. 그런데 프로젝트는 100개를 했으면 프로젝트당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냥 통으로 하는 것임. 그래서 그 자체를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검증도 못 했고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lump sum으로 한 것임. 과연 이것을 우리가 받아줄 것이냐, 그래서 금 감원은 그것을 통으로 신뢰성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회계법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임.
- (위원) 그것이 핵심임. 금감원은 사후이익률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불비하지만 그래도 할 만하다고 할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바람. 금감원도 2017년 시점에서는

협력업체 진행율 인정하는지? 최근에 와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비해서 이전에 했던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그렇다면 ○○회계법인은 거꾸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으나 과거에도 이 정도는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회계법인은 그렇게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차기군단급 무인기 체계개발 사업의 예상손실 미인식 관련', '수리온 체계개발 관련 치공구 일시상각 관련'도 있는데 감사인은 감사인대로, 예를 들어 2012년 12월28일에 계약했는데 손실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음. 그러니까 금감원 자료에 보면 12월22일 이사회 의안설명서에 계약은 707억 원에 했는데 예정원가는 960억 원이라는 자료가 있음. 금감원은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런데 ○○회계법인한테 만약 회사가 안 보여줬다면 감사인이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 (보고자) 감사인은 계약체결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전 자공시시스템에 계약체결이 공시되어 있었음.
- o (위원) 그러면 계약체결 공시시스템은 적자 나는 것으로 공 시되어 있었는지?
- (보고자) 그것은 아니지만 계약체결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음.

- o (위원) 금감원이 왜 '중과실'로 주장하는지를 ○○회계법인은 알고 있는지?
 - ▶ (진술인) 그렇지 않음.
-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저도 잘 이해가 안됌. 그러면 과연이 시회 의안설명서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예상손실액이 보다 분명하게 확정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기로 계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임. 그러니까 개략적인 추정을 가지고 손실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것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에 판결한 것이 있음. 금감원도 그 판결문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제시해 달라는 것임. 그리고 ○회계법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지적근거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금감원 이 지적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 (보고자) 알려드리겠음.
- (위원) ○○회계법인에 알려주면 ○○회계법인은 보고 역으로 변론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감사절차에 준해서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ㅇ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 보류*함.
 - * 만장일치로 보류함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40호 『○○○○○○○○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음.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39호 『○○○○헬스케어(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행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상정.
 - ⇒ 보류함(미상정)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증권선물위원회 제4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23시28분 폐회)